

검사대상기기 관리대행기관 지정요건 (제31조의29제1항 관련)

장비		기술인력
장비명	보유 대수	
1. 급수유량계	3대 이상	1. 「국가기술자격법」에 따른 기계, 금속, 화공 및 세라믹, 전기 또는 에너지 분야 기술사 1명 이상 2. 제31조의26 및 별표 3의9에 따른 국가기술자격자 및 인정검사대상기기관리자 각 5명 이상
2. 급유유량계	3대 이상	
3. 가스분석기 (CO ₂ , O ₂ , CO)	5대 이상	
4. 열전대온도계 (0~1,500℃)	2대 이상	
5. 표준온도계	3대 이상	
6. 표면온도계	3대 이상	
7. 매연측정기	1대 이상	
8. 스톱워치	5대 이상	
9. 증기압력계	3대 이상	
10. 수질분석기	1대 이상	
11. 증기건도측정기	1대 이상	